-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1.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1)

가. 제 출 자 : 경만선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12호

다. 제출일자 : 2018. 8. 27.

라. 회부일자 : 2018. 8. 28.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정진철 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142호

다. 제출일자 : 2018. 9. 19.

라. 회부일자 : 2018. 10. 1.

3. 추승우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추승우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166호

다. 제출일자 : 2018. 10. 16.

라. 회부일자 : 2018. 10. 29.

4.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2)

가. 제 출 자 : 경만선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180호

다. 제출일자 : 2018. 10. 17.

라. 회부일자 : 2018. 10. 29.

11. 제안사유

1.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1)

○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의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 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여객자동차, 항공, 도시철도,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동 조례 에 교통약자가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함.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고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내용을 반영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자전거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여 자전거이용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추승우 의원 대표발의안

○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청 소년을 비롯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

4.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2)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 운영되는 등 점차 정착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인해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 바, 일정 경정비 업무의 경우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기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 게 경정비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111. 주요내용

1.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1)

- 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8호)
- 나.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일반인과 차별이 없이 동등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장치 마련 (안 제3조제3항)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시장이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시장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추승우 의원 대표발의안

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4.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2)

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 게 경정비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의2제3항)

Ⅳ. 참고사항

1.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1)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8. 8. 31 ~ 2018. 9. 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원안 수용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8. 10. 5 ~ 2018. 10. 1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원안 수용

3. 추승우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같은법 시행령, 「청소년법」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 2018. 11. 1 ~ 2018. 11. 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원안 수용

4.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2)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8. 11. 1 ~ 2018. 11. 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원안 수용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1)

가.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장비 및 이용시설 확충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조례에 명시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2015년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름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힘입어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서울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1)에서 버스, 지하철,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약자들도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자전거 장비 및 시설을 전기자전거 확충 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을 정하여

¹⁾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

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용편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 야 할 것임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홍보·교육과 전기 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관련)
- 레저문화의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인프라 증가로 자전거를 교통수단 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한 피해여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²⁾
- O 안 제3조제3항은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²⁾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u>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u>(「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 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u>자전거를 운</u> 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서울시는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관련)

○ 안 제10조의2는 시·도지사 등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③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또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 으로써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런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

³⁾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추승우 의원 대표발의안

가.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한 10대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수송 대상으로 정하여 지하철 이용시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 받고⁴)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기본요금의 일부를 할인⁵⁾받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도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관련법에 의거하여 일부 감면⁶⁾ 받고 있음

○ 따라서, 공공자전거 따름이 이용요금의 일부를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해 감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미미한 청소년 이용률을

⁴⁾ 지하철 무임수송 대상별 관련 법률

구 분	관련 법률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제1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1항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1항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1항

⁵⁾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⁶⁾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감면제도

높이고 복지정책으로의 따름이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 될 수 있음

○ 다만, 공공자전거 따름이 1일 기본요금7)이 1천원에 불과하고 '18년 운영적자⁸⁾가 99억 8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및 운영수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감면비율 선정과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2)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확대로 피해 받고 있는 인근 영세 자전거 자영업 종사자가 따릉이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경정비 업무에 대한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구 분	관련 규정		
전화요금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제도·약관		
자동차보험료 할인	보험사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업체		
각종 수수료,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관련 법 및 지원 규정		

7)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기본요금					기본시간	추가요금
1년권	6개월	1개월	1주일	1일권	기준시신	구기표ㅁ
30천원	15천원	5천원	3천원	1천원	60분	0.2천원 (5분당)

(단위 : 백만원)

8) 공공자전거 운영간 적자규모(운영비용 - 운영수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비용	450	3,352	6,975	15,806
운영수입	77	1,003	3,094	5,826
적자	373	2,349	3,881	9,980

나. 검토 의견

- 서울시설공단은 '18년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중 94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고 자치구 위탁 15개소를 제외한 79개소를 1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하고 있음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제6항10) 에서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사업 중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와 같은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영세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김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공자전거 경정비 업무를 제3자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11)에 따라 최고가입찰로 진행함에 따라 실질적 수탁자가 인근 영세 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체 또는 인물로 정해질 우려가 있고.

⁹⁾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위수탁현황 (총 79개소) *자치구 19개소 제외

위수탁기관명	사업명	개수	위수탁기관명	사업명	개수
한지선	민간위탁(강북1권역)	7	안산과미래	민간위탁(강남2권역)	8
새서울개발㈜	민간위탁(강북2권역)	8	부경에스이에스㈜	민간위탁(강남3권역)	8
양소영	민간위탁(강북3권역)	7	(주)청마개발	민간위탁(강남4권역)	7
(주)하이파킹	민간위탁(강북4권역)	8	(주)흰돌기업	민간위탁(강남5권역)	8
한지선	민간위탁(강남1권역)	9	(주)하이파킹	민간위탁(강남6권역)	2
김계연	민간위탁(대림역2)	1	হন্ত্রগথন্য প্রথপ্রের	민간위탁(청계6)	1
조형래	민간위탁(청계6)	1	रुष्ठों भर समिटका	민간위탁(청계6)	1
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	민간위탁(마른내로)	1	남산소파길 상안연합회	민간위탁(남산소파길)	1
평화시장상인연합회	민간위탁(청계5)	1	(사)관철동 문화발전추진위원회	민간위탁(관철동)	1

¹⁰⁾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¹¹⁾ 제26조(계약의 방법)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영세 사업체 규모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전체 공공자전거 정비를 수행하거나 단말기 같은 기기의 정비가 어려워 별도의 정비업체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정비예산이 2중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과 실질적인 자전거 영세사업자 지원대책 마련이 세밀하게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